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
제2022-02호

2022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
부산지역 수시(자율) 훈련과정 모집 공고

2022. 3.

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1 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**고용위기 사업장, 취약계층 등** 직업훈련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하는 훈련수요에 대한 **대응 속도 강화** 필요

○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체 및 산업계의 수시 인력 및 훈련 수요에 즉시 대응

○ 현장성 높은 훈련이 공급되기 위하여 지역·산업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공급

□ 사업 내용

○ 사업 목적

- '22년 부산지역의 수시 훈련수요를 반영한 수시 훈련과정, 지역 내 **"위기산업", "전략산업"** 및 여성·중장년 등 **"취약계층"** 대상 훈련과정을 **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** 하에 **지산맞 수시(자율)훈련 과정**으로 효율적 개설·운영 도모

○ 지원대상

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대상업종에 속하는 산업
② 대량고용변동 신고가 접수된 산업
③ 특성상 경력단절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산업 등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
④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·신산업 또는 지역특화전략산업
⑤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에서 의결한 산업의 재직자, 채용예정자 등

○ **(훈련과정)** 위기 사업장 대상 훈련 및 취약계층 대상 훈련을 중심으로, 기존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

○ 심사 및 심의

- **(훈련예산)** 2022년 부산지역 내 수시 훈련과정 예산 한도(802,451천 원) 내 사용
- **(과정심사)** 2022년 수시 훈련과정 심사체계 준용

수요조사 및 결과안내	→	훈련계획서 제출	→	수시(자율) 훈련계획 검토	→	훈련계획 심사 및 심의	→	훈련과정 승인
부산인자위 →공동훈련센터		공동훈련센터 →부산인자위,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		부산인자위,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		부산인자위		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

2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1. 총괄

□ 부산지역 수시(자율)훈련 비용(예산): 802,451천 원

○ 지역별 승인된 훈련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된 수시(자율)과정 훈련계획서 심사 및 승인

(단위: 천 원)

지역	계(A)	정기승인액(B)	수시(자율)액(A-B)
총계	28,225,000	19,819,809	8,405,191
부산	**2,654,295**	**1,851,844**	**802,451**

※ 훈련비용=훈련비+수당+숙식비

2. 훈련 기관

구분	내용
공동 훈련센터	○ 2022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(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등 5개 소)
파트너 훈련기관	○ 공동훈련센터와 매칭하여 신청하고, 지원금 지원기준은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파트너훈련기관에 준하여 적용 **※ 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기관** 1) 『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)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3)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 4) 『평생교육법』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) 『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6)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7)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- 지원금 지원기준: 훈련비용(훈련비+숙식비+수당+임금 등)만 지원
  ·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HRD-Net 입력, 훈련비용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
-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은 필수요건*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
  ·단, **지산맞 수시(자율)과정에서만 활용 가능**
  ·심평원 인증평가 결과 '인증유예' 기관은 **참여 불가**
- ①교육부 주관「대학기본역량진단」결과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, ②심평원 인증평가 결과 '인증유예' 기관, ③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라 처분 중인 기관은 **참여 불가**
- 타 훈련사업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도 요건 부합 시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, 훈련과정은 사업 간 중복 불가

* 심평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의 필수요건 체크리스트

구분	필수 확인 항목(6개)	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
준법성	①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	▲ **최근 1년간**(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) 아래 ①~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**1건 이상 행정처분 이력**이 확인될 시 사업 참여 불가 ①시정명령, ②계약해지, ③인정취소, ④위탁·인정 제한(해당과정, 해당직종, 전 과정), ⑤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
	② 임금체불 이력 여부	▲ **최근 1년 내**(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) **'시정지시일' 또는 '검찰송치일'이 1건 이상** 시 사업 참여 불가
	③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	
재정 건전성	④ 세금체납 여부	▲ **최근 1년간**(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) **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** 중 어느 하나를 체납한 경우 사업 참여 불가 ※ 서류 미제출, 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관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(테스트페이지 포함), 서류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
훈련기관 적정성	⑤ 관계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 인정 여부	▲ 관계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의 범위 ①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단체 ③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 ④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학원 ⑥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시설 ⑦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▲ **과정인정 신청 전까지**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'훈련기관'으로 승인받아 HRD-Net에 입력(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)되어야 함
	⑥ 기타	▲ 정부지원금 유용, 기관 내부갈등, 부정행위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 ※ **'사회적 물의'**에 대한 판단은 부산인자위에서 적의 판단함

※ 기존 파트너훈련기관 또는 심평원 인증 보유기관인 경우 위 필수요건(6건) 검토 생략

3. 훈련 과정

□ 훈련과정 설계

○ '22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중 미개설된 훈련직종

- 채용예정자(11개 직종)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
1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7	824 용접원
2	140 건축 ·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8	832 전기·전자 기기 설치·수리원
3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 (운송장비 제외)	9	834 전기 · 전자 설비 조작원
4	812 운송장비 정비원	10	835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생산기계 조작원
5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	11	872 식품 가공 기능원
6	816 기계 조립원(운송장비 제외)	**11개 직종**	

- 재직자(14개 직종)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
1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8	835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생산기계 조작원
2	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(크레인 · 호이스트 · 지게차)	9	836 전기 · 전자 부품 · 제품 조립원
3	811 기계장비 설치 · 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	10	852 고무 ·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
4	814 냉 · 난방 설비 조작원	11	861 섬유 제조 · 가공 기계 조작원
5	817 운송장비 조립원	12	862 패턴사, 재단사 및 재봉사
6	821 금속관련 기계 · 설비 조작원	13	864 제화원, 기타 섬유 · 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
7	825 도장원 및 도금원	14	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

○ 기업수요 맞춤형, 고숙련·신기술(4차 산업), 스마트공장 관련 훈련과정

○ **기존 지산맞 훈련 등과 중복되지 않는 우선훈련직종, 고용 위기산업 또는 전략산업 종사자, 취약계층** 대상 훈련과정

< 훈련과정 설계·개발 시 우선 고려사항 >

1) 고용위기 산업, 취약계층 특화과정(중장년, 경단녀 등) 등 부산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과정
2)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·신산업 또는 지역특화전략산업 관련 과정
3) 취업률(채용예정자), 수료율, 전년도 훈련규모 등 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(채용약정서 등) 등 실적 반영

○ NCS 경영·회계·사무(대분류 02) 분야의 중분류 01~03 등 기존 훈련기관 또는 타 훈련사업에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과정은 원칙적 제외

○ 타 훈련사업에서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**동일한 과정** 및 '22년도 지산맞 정기심사 **중복·탈락 과정**은 **수시(자율)과정으로 운영 불가**

○ 훈련정원(총 인원 포함), 훈련시간, 교·강사, 시설·장비 등 기본적인 훈련과정 인정 요건은 **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및 관련 매뉴얼을 준수**하여야 함

- 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**720시간 초과 불가**
  ·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**훈련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**이어야 함

○ 훈련과정명 작성 시 유의사항

< HRD-Net 훈련과정명 입력(신청) 시 유의사항 >

▸ **수시 훈련과정명 입력(신청)시, 반드시 아래 형식(예시)에 의거하여 입력(신청) 요망**

연번	구 분	훈련과정명 양식	비 고
1	일반	(수시) 000 향상과정_일반	**※ 훈련유형이 중복되는 경우, 훈련과정명에 해당 키워드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** - 훈련과정명 형식 미준수 시 유형별 훈련 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<ex> (수시) 000향상과정_중장년ICT_비대면
2	중장년ICT	(수시) 000 향상과정_중장년ICT	
3	고용위기	(수시) 000 향상과정_고용위기	
4	비대면(원격대체)	(수시) 000 향상과정_비대면	
5	유급	(수시) 000 향상과정_유급	

□ 채용예정자 훈련 심사·운영

○ 채용예정자훈련은 **기준에 부합한 취업률 및 훈련생 지원계획(채용약정) 등이 담보되어야만 승인 및 운영 가능**

- 채용예정자훈련의 훈련-취업 연계 강화 지원을 위해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**'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' 제출**

* 훈련과정 승인·인정 후 HRD-Net 실시신고 시 '확인서'를 증빙으로 필히 첨부(서식2 참조)

< 2022년도 지산맞 수시(자율)훈련과정 채용예정자 훈련 판단 기준 >

구분	내용
우수 취업률	**① 지산맞 채용예정자과정 운영실적이 있는 공동훈련센터** **(1-1) 동일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** **(단, '22년 정기과정으로 승인·운영되는 과정은 불허)** - 심사일 기준 최근 2개년 동일과정 평균 취업률 70% 이상 **(1-2) 동일과정이 아닌 경우** - 심사일 기준 최근 2겨낸동안 해당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한 지산맞 채용예정자 과정(전체)의 평균 취업률(기관별) 및 취업률 관리방안 등을 감안하여 판단 **② 지산맞 채용예정자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공동훈련센터** - 심사일 기준 최근 2개년 해당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한 내일배움카드,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유사과정의 평균 취업률 70% 이상 * **(유사과정 기준)** NCS 소분류(대표)가 일치하고, 교과목 내용 및 시간 모두 80% 이상 일치하는 경우
훈련생 지원계획	○ 과정별 계획인원의 80%(소수점 첫 째자리 반올림) 이상에 대해 **채용약정서 제시** 필수(서식1 참조)

※ 취업률은 훈련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실적의 산술평균을 의미

□ 훈련비용

○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300% 이내에서 지원

< 2022년도 지산맞 수시(자율)훈련과정 훈련단가 지원 기준 >

구분	지원요율
NCS 2~4수준 과정	100~**150%** 이내
NCS 5수준 이상**을 충족하는** 신기술(4차 산업) 과정	100~**300%** 이내
NCS 5수준 이상**을 충족하는** 지역특화전략산업 과정	100~**200%** 이내

○ 훈련비 지원 기준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)

-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, 동일한 내용으로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
- 훈련비용 등의 지원기준은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제17조를 따르며, 3개월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단위 기간별로 지급 가능

○ 지원요건 및 기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훈련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 (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)	○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
훈련 수당	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 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,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	○ 사업주(또는 훈련기관)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
임금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--- 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(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)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	○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
식비 또는 숙식비	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(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)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	○ 식비는 1일 5,000원까지, 숙식비는 1일 14,000원(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,000원)까지 지원

※ 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업에게 직접 환급
※ 임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세부항목별 지원기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	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,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	○ 실비로 인정하되,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·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강사료	①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	○ 시간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○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가능(다만,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/2 초과금지) * 훈련기관이 신기술(4차 산업 중심)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 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% 이내에서 지원 가능
강사여비	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,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	○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
과정운영 보조인력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·지원하는 보조인력비	○ 시간당 지원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% 한도 ○ 훈련과정 회차당 1명을 지원 가능하며, 훈련시간 및 훈련시간 전후의 준비·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(총16시간) 지원 가능
운영지원비	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 운영자의 출장비용	○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
다과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	○ 1인당 1일 3천 원 한도
제세공과금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,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	○ 실비지원
실습재료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	○ 실비지원(다만, 프로젝트, 음향시설, 노트북 등 임대료는 불가)
교재구입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	○ 실비지원
재해보험료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	○ 실비지원
그 밖의 훈련비용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, 문구비 등	○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,000원 한도 (다만,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개월당 3,000원 한도) ○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
간접비	① 지역·산업 맞춤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	○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% 범위 이내(파트너 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)

※ 훈련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예산 항목: 보증보험료, 과정홍보비, 교육훈련과 무관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, 4대 보험료, 건강검진료, 상조회비(직원복지비) 등

- 강사료 지급 기준안

등급 / 구분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E등급
금액	20만원(시간당) 한도	15만원(시간당) 한도	10만원(시간당) 한도	7만원(시간당) 한도	5만원(시간당) 한도
자격	· 차관급이상 공무원 · 연구기관임원급 이상 · 부총장급(대학) 이상 · 박사 취득후 경력15년 이상 · 석사 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· 학사 취득 후 경력25년 이상 · 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27년 이상 · 경력 30년 이상 · 기업체 사장급(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)	· 4급 이상 공무원 · 책임연구원급(연구위원) 이상 · 정교수급 이상 · 박사 취득 후 경력9년 이상 · 석사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· 학사 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· 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 17년 이상 · 경력 20년 이상 · 기술사, 기능장 또는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	· 5급 이상 공무원 · 선임연구원급(부연구위원) 이상 · 부교수급 이상 · 박사 취득 후 경력4년 이상 · 석사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· 학사 취득 후 경력10년이상 · 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· 경력 15년 이상	· 6급이하 공무원 · 선임연구원급(원급) 이상 · 조교수급 이상 · 박사 취득 후 즉시 이상 · 석사취득 후경력3년이상 · 학사 취득후 경력6년이상 · 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8년 이상 · 경력 11년 이상	·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

※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상 공직자 등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

□ 훈련과정 운영 유의사항

○ 운영절차는「사업주훈련 지원규정」,「지산맞 운영규칙」을 준용

○ 훈련과정은 '21. 12. 31.까지 종료되어야 하며,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기관에서는 실적 관련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적 협조

○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**HRD-Net 실시신고시 '채용예정자훈련 운영안내 확인서'**를 증빙으로 **필히 첨부**(서식2 참조)

○ **비대면훈련(원격대체훈련) 운영 가능**, 실시 전 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

○ 지역 고용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을 위해 최종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훈련 실시 권장

○ '22년도 수시(자율)과정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는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예정(목표대비 실시인원, 취업률, 수료율 등)

○ 회차 추가는 승인 이후 최대 2회까지 가능

- **(운영절차)** 공동훈련센터가 부산인자위에 회차 추가 보고 → 부산인자위에서 공단 부산지역본부에 훈련 실시 신청

훈련과정ID	수시 훈련과정명	최초 승인일자	'22년 회차추가
ABB20000000000000	(수시) 기계설계_일반	2022. 00. 00.	2회

- 2021년 기승인 수시과정 회차 추가

< 2021년 기승인 수시과정 >

▸ '21년 승인된 수시과정 중 **유효기간 1년 이내**인 훈련과정의 경우 **별도 수요조사와 공단 지부·지사 심사 없이 회차추가(최대 2회)**하여 실시 가능
- 운영절차는 2022년 회차 추가와 동일하게 적용
- '21년 "찾아가는 직업훈련" 승인과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이 경우 '22년도 수시(자율) 과정 운영실적으로 집계

▸ 단, **채용예정자훈련 회차추가**(찾아가는 직업훈련 과정 포함) 시,
① 기 실시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70% 이상이면서,
② 과정별 계획인원의 80% 이상에 대한 채용약정서[서식 1] 및,
③ 채용예정자 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[서식 2]를 제출하여야 실시 가능

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・접수기간: 사업기한(~12. 31.) 홀수 달 5일까지 제출(총 4회)

○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

○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**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**

- 제출기한: 전월 30일까지
- 제출방법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메일 제출
  (busanhrd@korcham.net, sonse1@korcham.net)
- 제출내용: 2022년 수시(자율) 훈련과정 일람표(00월)

□ 제출서류

○ 2022년 부산지역 수시(자율)과정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

- 2022년도 지산맞 수시(자율)과정 훈련계획서(원본) 및 제출 공문 1부
- 훈련계획서 제본 10부(공단 부산지역본부 2부, 부산인자위 8부) 및 전자파일(USB) 1개 제출

○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

□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접 수 처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및 공단 부산지역본부

4 추진계획(안)

□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심사	훈련계획서 접수	훈련계획검토	훈련계획 심사 및 심의	공단지부 과정인정	훈련실시
	훈련기관→ 부산인자위, 공단지부	부산인자위, 공단지부	부산인자위	부산인자위 →공단지부	훈련기관
1차	3. 25.(금)	3. 28(월)	3. 31.(목) ~4. 6.(수)	4. 7.(목)	4. 8.(금)~
2차	5. 4.(수)	5. 10.(화)	5. 16.(월)~23.(월)	5. 24.(화)	5. 25.(수)~
3차	7. 5.(화)	7. 11.(월)	7. 15.(금)~22.(금)	7. 25.(월)	7. 26.(화)~
4차	9. 5.(월)	9. 13.(화)	9. 15.(목)~23.(금)	9. 26.(월)	9. 27.(화)~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